

**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**(제28조제1항 관련)

자격의 종류	자격요건	업무 범위
1. 목구조시공기술자	<p>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p> <p>가.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700시간 이상 목구조시공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</p> <p>나.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0시간 이상 목구조시공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p> <p>1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축·목재 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</p> <p>2)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350시간 이상 건축·목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</p> <p>3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·목재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</p>	<p>가) 목재 구조물 설치</p> <p>나)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시공</p> <p>다) 목재 구조물,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자재관리</p>
2. 목구조관리기술자	<p>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0시간 이상 목구조관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p> <p>가. 제1호의 목구조시공기술자로서 1년 이상 건축·목재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</p> <p>나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축·목재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</p> <p>다.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700시간 이상 건축·목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</p> <p>라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·목재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</p>	<p>가) 목재 구조물 설치·관리</p> <p>나)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시공·관리</p> <p>다) 목재 구조물,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자재관리</p>